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ㅠ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861)

2025. 09. 0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861

Ⅰ. 동의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5. 05. 26.

다. 회부일자 : 2025. 05. 29.

2. 제안이유

가.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재위탁하여 양질의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6,365,961천원(‘25년 예산)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2025년 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5. 5. 9.)

나. 추진 필요성 및 위탁사무

○ 추진 필요성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응급구호, 목욕, 세탁 등 기초 편의 서비스 제공, 의료·주거·일자리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 정신질환,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심층 평가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자활지원 전략개발 및 수행을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노숙인 상담 및 응급구호, 목욕, 세탁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지원주택,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노숙인 일자리 연계 및 자활지원

○ 노숙인 무료 부속의원 운영 및 의료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라. 시설 위치 :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본관)

○ 시설규모 : 1,300㎡(지하 1층, 지상 5층)

※ 본관 기준, 부속시설(서울역희망지원센터, 부속의원, 후원의류 분류작업장) 별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 다시서기종합센터의 협약 기간이 ‘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1]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사무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일시보호시설 포함)
- 노숙인 상담 및 응급구호, 목욕, 세탁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 지원주택,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노숙인 일자리 연계 및 자활지원
- 노숙인 무료 부속의원 운영 및 의료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위탁범위 : 시설형 사무위탁

○ 위탁기간 : ‘26. 1. 1. ~ ‘30. 12. 31.

○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본관)	(재)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5.3.1~ ‘25.12.31 (6회)	6,365백만원 (25년 예산)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노숙인 관련 주요현황

○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5월 14일 기준 일시집계조사 결과, 노숙인 등은 14,404명으로 이 중 쪽방 주민을 제외한 노숙인은 8,956명(62.2%), 쪽방주민은 5,448명(37.8%)로 집계됨.

○ 전국 노숙인 중 29%에 해당하는 2,600명이 서울에서 집계되었으며 그다음 순으로 경기 1,230명(13.7%), 대구 871명(9.7%), 경남 776명(8.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숙인 등의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연말 지자체로부터 취합하는 데이터와,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에 일제 조사하는 일시집계조사로 파악되는데 행정자료에 의해 파악한 노숙인 등의 규모는 2009년 20,324명에서 2020년 14,866명으로 11년간 5,50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에서는 매년 일시집계조사를 실시해 노숙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24년 일시집계조사를 통해 집계된 노숙인 수는 3,067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외에도 노숙인시설(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등)을 운영하며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음.

나.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숙인시설로, 동법 제19조[2]에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3]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총 3개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표>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별 관할 지역

구 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서울역 일대	시청.을지로 일대	영등포역 일대
관할 자치구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서울역 인근)	서대문구, 종로구, 마포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중구(서울역 인근 제외)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숙인 등을 노숙인시설 간에 전원조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정, 협의 및 결정
2.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
3.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위기관리사업 등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 해당 사무는 서울시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임. 단순 자원 연계뿐만 아니라, 노숙인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맞는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서울특별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 및 운영 현황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초 위탁부터 지금까지 현재 위탁기관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옴.

<표> 서울특별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1년 10개월 ('05.3.1.~'06.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지정위탁	
2차 위탁	3년 ('07.1.1.~'09.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계약	
3차 위탁	3년 ('10.1.1.~'12.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계약	
4차 위탁	3년 ('13.1.1.~'15.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계약	
5차 위탁	5년 ('16.1.1.~'20.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공개모집	
6차 위탁	5년 ('21.1.1.~'25.12.31.)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계약	

○ 시설의 세부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table>
<tr><td rowspan="5">세부 시설 현황</td><td>시설명</td><td colspan="2">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td><td>시설유형</td><td colspan="2">노숙인 종합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td></tr>
<tr><td>위 치</td><td colspan="2">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본관)</td><td>연락처</td><td colspan="2">☏ 02)777-5217</td></tr>
<tr><td>시설규모</td><td colspan="2">1,300㎡(지하 1층, 지상 5층)
※ 본관기준, 부속시설 별도</td><td>소유자</td><td colspan="2">서울시(시립)</td></tr>
<tr><td rowspan="3">건물 현황</td><td>건물</td><td>소재지</td><td>연면적(㎡)</td><td>구조</td><td>주요시설</td></tr>
<tr><td>본관</td><td>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td><td>1,300</td><td>철골조</td><td>식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생활관, 사무실 등</td></tr>
<tr><td>서울역</td><td>중구 봉래동2가 124</td><td>495</td><td>가설</td><td>상담실, 응급구호방, 휴게실,</td></tr>
</table>

		희망지원센터			건축물	옷방, 샤워실 등
		부속의원	중구 통일로 21	328	임차건물	의료접수실, 진료실, 약제실, 방사선실 등
		응급대피소	중구 남대문로5가 9-2(지하보도)	250	가설 건축물	응급구호방, 화장실, 샤워실 등
		후원의류 분류작업장	성동구 가람길 125 중랑물재생센터 내부	210	가설 건축물	후원의류 분류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
	직원 수	70명 (지원주택 12명, 공중보건의 1명 포함)		운영방법	민간위탁	
	설립일	'05. 3. 1.		운영주체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대표 유낙준)	
	이용현황	일평균 취침 161명(연인원 14,509명), 급식 363명(연인원 47,188명) 등				

○ 연도별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주요 실적

(단위 : 건,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3월
연간 상담건수	계	30,965	29,926	37,817	45,476	11,737
	종합지원센터	8,527	6,443	5,095	6,206	1,275
	희망지원센터	17,754	17,613	25,423	32,230	8,548
	정신건강팀	4,684	5,870	7,299	7,040	1,914
잠자리 제공	계	36,969	48,474	44,144	47,705	14,509
	종합지원센터	35,270	45,412	36,937	32,383	8,416
	희망지원센터	1,699	3,062	7,207	15,322	6,093
식사제공 인원	계	58,352	91,573	130,886	136,539	47,188
	종합지원센터	54,954	86,049	127,506	131,664	32,665
	희망지원센터	3,398	5,524	3,380	4,875	14,523
시설입소 연계	계	338	350	378	321	85
	종합지원센터	48	22	26	37	14
	희망지원센터	148	128	196	188	42
	정신건강팀	142	200	156	96	29
임시주거 지원	주거지원	393	363	397	392	147
	기초생활수급신청	173	176	178	192	23
	일자리지원	85	87	50	42	9
지원주택	운영호수	36	36	69	69	69
	입주인원	34	34	61	59	56
	사례관리 건수	6,864	8,490	10,429	14,257	3,605
부속의원	주·야간 진료	4,494	5,157	6,073	7,247	1,818
	상급병원 진료의뢰	3,496	3,466	2,721	2,567	590

○ ‘23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에서는 25개 항목(89.3%)에서 충실, 2개 항목(7.1%)에서 보통, 1개 항목(3.6%)에서 보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 평가에서는 응급대처 매뉴얼과 응급조치반의 운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종사자 1인당 교육비 지출이 타 시설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해당 사업은 2025년 5월 실시된 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등급을 받아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임.

3 종합의견

○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개인의 삶이 질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4)]

○ 특히 노숙인은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과 만성화가 빈번하여 노숙예방과 노숙에 빠지면 최대한 빨리 노숙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즉시 개입을 통한 재노숙에 대한 단절이 중요함. 또한 노숙인의 정신질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도 가족 불화 및 해체, 사회적 관계 단절 등 노숙의 원인 또한 복합적이 되어가는 양상임. 따라서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인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5)]

---

4) 정용제(2024).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333호(2024.11.27.)

○ 본 사무는 서울시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노숙인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고, 필요한 자원 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해당 민간위탁 사무는 최초 수탁 시점부터 동일한 재단이 지속해서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위탁 업무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해당 사무는 노숙인이라는 특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의 이유로 신규 수탁기관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역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속해서 동일한 기관이 반복적으로 사업을 수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형식화가 우려될 수 있음. 향후 재위탁 공모 진행 시,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수탁기관의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책임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음.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

5) 윤민석 외(2021.) 「서울시 노숙인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서울연구원.